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

시행일: 2016.03.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2조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과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채용조건형)
2.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재교육형)

제3조 (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① 대학과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역'은 동일한 광역 행정구역(시·도 단위) 내 또는 대학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100km 이내인 경우로 한다. 다만, 복수의 지역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산업체등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학과 동일한 '권역'내에 위치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함을 명시한 경우 '권역 내'의 계약으로 본다.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속직원이 아닌 자의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한 경우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7조 제3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7조에 따라 지원한다

④ 계약학과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등과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산업체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기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계약학과의 설치는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 할 수 있다.
- ⑥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른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부처,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산업체 등의 소유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체 등은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기간은 본교와 산업체 등 간에 체결된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지원자격 및 선발) ① 계약학과 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각각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6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산업체등의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입학일 기준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3자 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 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추천서에는 재직증명서 및 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매학기 재직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학과의 입학 또는 편입학 선발절차는 본교의 학칙과 제규정을 따른다.

제7조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4조의 공동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총당한다.

② 제2조 제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학생에게는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③ 제2조 제2호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산업체 등의 부담금으로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등록금은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단,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부담금 등은 제3조 제4항 제5호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

2.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

- ④ 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담당한다.

제 3 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9조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수업 등) ①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 운영하며, 산업체와 교육과정 협의를 의무화 하고 학생 학업상황을 학기에 1회 산업체에 통보한다.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단, 프로젝트 수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7조 제3항에 의한 산업체 부담금을 제17조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 수업의 비중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교과과정과 이수학점) ① 계약학과의 교과과정은 기존 동일 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에 동일 학과가 없거나 계약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공과목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편제와 학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의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당해 계약 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학점인정은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학과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학기 및 수업일수) 계약학과의 학기 및 수업일수에 대한 사항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제20조 내지 제21조에 따른다.

제12조 (졸업요건) 계약학과를 졸업·수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에 따른다.

제13조 (휴학 및 복학) ① 휴학 및 복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은 반드시 설치운영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만일 설치운영기간 종료 후 복학 시에는 유사학과에서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으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학교에서 정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종합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내규」에 따른다.

②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제15조 (계약학과 설치·운영현황 공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매년 9월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제 4 장 회계 관리

제16조 (회계관리) 계약학과의 회계관리는 교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① 산업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4조의 3자 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산업체 등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금 등) ① 대학과 산업체 등의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 등이 제공하는 경우, 산업체 등이 납부금의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② 현물로 상계할 수 있는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 및 「경희대학교일반대학원내규」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